

의안번호	제 152 호
의 결 연 월 일	2019년 3월 일 (제371회)

## 충청북도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

발 의 자	송미애 의원 등 9인
발의연월일	2019년 2월 26일

# 충청북도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

## (송미애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2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9년 2월 26일  
발의자 : 송미애, 전원표, 허창원,  
연철흠, 이옥규, 정상교,  
김기창, 박형용, 서동학

### 1. 제안 이유

- 일제강점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선열들의 희생정신과 민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도내 독립운동 유적에 대한 발굴 및 체계적 조사와 보존활동을 지원하고자 함.

### 2. 주요 내용

-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조사와 보존에 대한 정의(안 제2조)
-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(안 제5조)
- 독립운동 유적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위원회 구성(안 제6조)
- 위원회의 보존 결정 독립운동 유적에 대한 보존 및 관리(안 제7조)
- 독립운동 유적 보호·보존·보급 또는 선양사업의 지원(안 제9조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문화재보호법」
- 나. 관련부서 협의 :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산업과와 협의함.

다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라. 입법예고 : 2019. 2. 7. ~ 2019. 2. 17.(10일간)

## 충청북도조례 제 호

# 충청북도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충청북도내 독립운동 유적에 대한 발굴 및 체계적 조사와 보존을 통해 도민들이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일제강점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선열들의 희생 정신과 자주독립을 이루어 낸 민족정신 계승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“독립운동”이란 일제의 억압에 항거하고 민족의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통칭한다.
- “독립운동 유적”이란 독립운동과 관련된 도내 장소 또는 유·무형의 자산 일체를 말한다.
- “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조사와 보존”은 독립운동 유적과 관련된 지역과 유적지에 대한 조사·연구,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보존까지를 말한다.

**제3조(도지사의 책무)**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독립운동 유적에 대한 체계적 보존을 위하여 시·군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, 필요시 관련 단체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학술적, 역사적으로 증명된 독립운동 유적에 대해 충청북도민(이하 “도민”)이 공유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도지사는 독립운동 유적에 대해 시·군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

여 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.

**제4조(시·군의 협조요청)** 도지사는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·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**제5조(시행계획 수립)** ① 도지사는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을 위한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독립운동 유적 선정 기준 및 조사와 보존에 관한 계획
2. 독립운동 유적의 보존 및 표지석과 조형물 등 설치 계획
3. 독립운동 유적 발굴과 보존 등에 필요한 경비
4. 기타 독립운동 유적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**제6조(위원회 구성)** ① 도지사는 독립운동 유적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10명 이내의 전문가들로 ‘독립운동 유적 발굴·보존을 위한 자문위원회’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내 독립운동 자료 수집 및 분석
2. 도내 역사관련 단체와의 협력 및 고증을 위한 공동연구
3. 역사적 가치 판정과 유적의 보존 결정 등
4. 표지석 및 조형물 등의 설치, 유적 보존방법 등

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7조(유적 보존 및 관리)**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보존 결정 독립 운동 유적에 대하여 표지석 등의 설치를 통해 도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유지 소유주의 동의 등 설치 절차 및 세부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② 도지사는 위원회에서 보존 및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독립운동 유적에 대하여 별도의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③ 도지사는 소유자·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시·군에 관리·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.

**제8조(민간위탁)** ① 도지사는 독립운동 유적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·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법인·단체 등에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9조(행·재정지원)** ① 도지사는 독립운동 유적 발굴·보존·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시·군이나 관련 법인·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경우에는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를 따른다.

**제10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련법령 발췌

### □ 문화재보호법

-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 ①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·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국민은 문화재의 보존·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## **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**

### **○ 첨부제외 관련규정**

-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제4항  
제1호

### **○ 사 유**

-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 
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

### **○ 작성자**

-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산업예술판장 김연준